

2021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기관인증 표준지침

(각 단계별 기관 필수 인증요건은 '별첨1' 참조)

(비만대사수술위원회 조직도 예시는 '별첨3' 참조)

1. 비만대사수술위원회 구성

요구조건: 모든 비만대사수술 인증 기관은 기관 내 비만대사수술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이는 비만대사수술 인증 외과의, 코디네이터, 임상평가원으로 구성된 다직능 집단이어야 한다. 위원회는 비만대사수술의 질 관리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비만대사수술 위원장, 코디네이터, 임상평가원을 두어야 하고 수술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해야 하며, 연간 최소 3회 이상의 회의를 가져야 하고, 최소 1회 이상은 질관리, 수술 및 시술량, 성적을 평가하는 종합적 검토 회의로 진행하여 정도관리 및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만약 인증의 부재(사직, 이직)가 발생하면 위원회에서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학회는 해당 기관에 대한 인증을 한시적으로 보류할 수 있다.

필요문서

- ① 비만대사수술위원회 조직도 및 각 구성원의 직능 (위원장, 코디네이터, 임상평가원)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
- ② 위원회 조직 후 시행한 위원회 모임에 대한 회의록(날짜, 회의내용, 참석자 기재)
- ③ 각 구성원의 자격증

점검사항

- ① 연간 최소 1회의 종합적 검토 회의를 포함한 최소 3회 이상의 회의를 가져야 함
- ② 종합적 검토 회의에는 비만대사수술 인증의 및 비만대사관련 시술의가 모두 참석해야 함 (위원장이 인정한 불참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불참 사유서 제출)

1-1. 비만대사수술 위원장

요구조건: 비만대사수술을 활발히 시행하는 인증 외과의로서, 기관의 비만대사수술 위원회를 조직하고 관장하는 이를 비만대사수술 위원장이라 하는데, 연간 최소 2회 이상 위

원회 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위원회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임상 결과를 수집하는 활동에 협조해야 하며, 기관 내의 타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활발히 시행하여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비만대사수술 기관 인증을 위해 각 기관 당, 최소 1인 이상의 비만대사수술 인증의를 필요로 한다.

필요문서

- ① 대한비만대사학회에서 인정하는 비만대사수술 인증의 인증서
- ② 비만대사수술 위원회 조직도: 비만대사수술 위원장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을 기재
- ③ 위원회 회의록: 비만대사수술 위원장의 위원회 회의 참석 여부(년 2회 이상) 증명

점검사항

- ① 대한비만대사학회에서 인정하는 비만대사수술 인증의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함
- ② 위원회 회의에 참석함을 증명해야 함
- ③ 위원회 회의 내용: 위원장이 기관의 질 향상을 주도해야 함

1-2. 비만대사수술 코디네이터

요구조건: 국가가 공인한 면허가 있는 의료인으로서 위원회는 비만대사수술과 관련된 코디네이터를 두어야 하는데, 각 기관의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비만대사수술 기관의 발전과 인증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며, 환자교육, 임상결과 수집, 질 향상 프로그램, 스텝의 교육 등 광범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이러한 코디네이터는 비만대사수술 임상평가원으로도 활동이 가능하며, 임상평가원이 아닌 사람이 임명될 경우 평가원과 함께 임상결과를 수집하는데 긴밀히 협조하는 책임을 갖는다.

기관인증 신규 및 갱신 후 인증코디네이터 부재(퇴직 및 이직) 발생시 해당업무를 대신할 인원을 지정하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추후 재갱신까지 인증코디네이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필요문서

- ① 국가가 공인한 의료인 자격증
- ② 비만대사수술 위원회 조직도: 비만대사수술 코디네이터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을 기재
- ③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에서 부여한 코디네이터 인증을 획득 (기관인증 갱신 및 2022년 3월 이후 신규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에 적용)

점검사항

- ① 위원회 내에서 역할에 대한 명시(조직도)가 있어야 함
- ② 국가가 공인한 의료인 자격증이 있어야 함

1-3. 비만대사수술 임상평가원

요구조건: 위원회에 소속된 비만대사수술에 대한 적절한 임상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를 임상평가원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이는 필요한 정보를 모아 대한비만대사학회에 지속적으로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임상평가원은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각 인증기관의 임상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책임을 갖게 된다. 또한, 임상평가원은 위원회의 각 임상의와 활발히 교류하며 연간 2회 이상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필요문서

- ① 국가가 공인한 의료인 자격증
- ② 비만대사수술 위원회 조직도: 비만대사수술 임상평가원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을 기재
- ③ 위원회 회의록: 비만대사수술 임상평가원의 회의 참석 여부 기재

점검사항

- ① 위원회 내에서 역할에 대한 명시(조직도)가 있어야 함
- ② 위원회 회의 참석 여부(년 2회 이상) 증명해야 함

2. 비만수술관련 인력 및 시설

요구조건: 비만대사수술 인증기관에서는 위에서 정한 위원회의 필수 인력을 포함하여, 의료 지식을 보유한 지속적인 간호 인력과 비만대사수술을 받을 환자를 위한 지정된 설비 구역을 갖추어야 한다.

2-1. 비만대사수술 종사하는 의료인력(간호사, 영양사, 운동치료사 등)

필요문서:

- ① 각 직종에 대한 자격 증명서
- ② 비만대사수술 위원회 조직도: 각 직종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을 기재

점검사항:

- ① 각 직종의 인력이 비만대사수술 환자 치료에 종사함을 증명해야 함
- ② 비만대사수술 위원회 조직도 내 역할이 명시되어야 함
- ③ 각 직종에 대한 자격 증명서류를 구비해야 함

2-2. 비만대사수술 마취에 대한 지원

요구조건: 비만대사외과학회에서 승인한 비만대사수술 마취 관리에 대한 프로토콜 및 비만대사수술 담당 마취과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필요문서

- ① 고도비만환자 수술 마취관리에 대한 프로토콜
- ② 고도비만환자 수술 담당 마취과 전문의가 명시된 조직도
- ③ 마취과 전문의 자격 증명 서류를 구비

점검사항

- ① 비만대사수술 마취관리 프로토콜 및 조직도 내 고도비만환자 수술 담당 마취과 전문의 명시가 있어야 함
- ② 마취과 전문의 자격증

2-3. 집중치료실 및 중환자실 지원

요구사항: 중환자 치료 및 관리가 가능한 집중치료실 및 중환자실 설비가 있어야 한다. 중환자를 24시간 관리하는 중환자 의학 전문의 혹은 외과의 그리고 중환자 전문 간호인력이 있어야 한다.

필요문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중환자실 관련 문서(조직도 등)

점검사항: 중환자실 관련 문서 확인

2-4. 광범위한 내시경 지원

요구사항

- ① 진단 및 치료 내시경이 가능한 의료인력이 있어야 한다
- ② 내시경 시술 보조할 전문간호인력이 있어야 한다
- ③ 진단 및 치료 내시경이 가능한 내시경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필요문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내시경 지원에 관련된 문서 (내시경실 조직도, 장비 내역서 등)

점검사항: 내시경 지원에 관련된 문서 확인

2-5. 광범위한 진단 및 중재 방사선 설비

요구사항

- ① 영상의학적 진단, 경피적 배액술 및 기타 중재 시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 ② 진단 및 중재 방사선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필요문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중재시술 지원에 대한 문서(중재시술 담당 전문의, MRI, CT, 투시 설비)

점검사항: 필요문서 사항을 모두 확인

2-6. 관련된 타과 협진 진료 인력

요구사항

- ① 호흡기, 순환기, 신장, 내분비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등 이 비만대사수술 환자의 진료에 참여해야 한다.
- ② 상기 의료 인력에 관하여, 조직도 내 역할이 명시되어야 한다.

필요문서: 타과 진료 지원이 명시된 조직도

점검사항: 필요문서 사항을 모두 확인

3. 비만대사수술 전문 설비 및 기기

요구 사항

인증 기관은 비만대사수술 환자를 위한 적절한 기계 및 기구를 구비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설비에는 가구, 휠체어, 수술 침대, 화장실 설비, 영상의학적 장비, 침상, 수술 장비, 기타 병적비만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 및 간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설비를 포함한다.

비만대사수술은 고체중의 병적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환자의 운반 및 이송 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설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설비는 제조사에서 제공한 감당 가능한 무게 중량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환자를 다루는 인력들이 숙지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각 인증 기관이 다음의 설비를 갖추도록 요구한다.

- ① 고도비만환자 사용가능한 수술대
- ② 고도비만환자 사용가능한 일반 촬영실(조영제 촬영 가능)
- ③ 영상의학적 진단 설비(Portable X-ray, Ultrasound 등)
- ④ 고도비만환자 사용가능한 수술기구(자동 봉합기, 견인기, 길이가 긴 복강경 수술기구)
- ⑤ 고도비만환자 사용가능한 심폐소생술 장비확보(기관삽관, 인공호흡, 혈액학적 모니터 가능)
- ⑥ 고도비만환자 사용가능한 심부정맥 혈전증 방지용 순차적 압축 소매(Sequential compression device sleeve)
- ⑦ 고도비만환자 사용가능한 병실: 침대, 가운, 화장실
- ⑧ 고도비만환자 사용가능한 저울, 비만 환자용 휠체어, 이동용 카트, 보행기(walker)

인증 평가 시, 위 (1), (8) 항목은 가능한 무게 및 키에 대한 규격(최대 하중)을 제시하여야 한다.

필요문서

- ① 비만대사수술 환자를 치료하는 곳에 체중 및 크기에 맞는 시설, 장비 및 도구가 제공된다는 증거.
- ② 현장에 없는 장비에 대한 대여 또는 임대 계약으로 기간이 명시된 문서 (현장에 필요한 모든 장비가 있는 센터에는 필요하지 않음).
- ③ 장비의 최대 하중이 명시된 문서.
- ④ 장비의 최대 하중을 초과하는 환자를 위한 대처 방법에 대한 문서.

점검사항: 필요문서 사항을 모두 확인

4. 응급환자에 대한 연락 및 이송에 관한 사항

(응급상황시 연락망에 대한 예시는 '별첨4' 참조)

요구사항: 1 차 혹은 2 차 인증기관의 경우, 잘 구비된 중환자실이 없더라도 기도확보와 기관 삽관이 가능하며, 인공호흡기, 혈액학적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면, 상급병원으로 이송 가능한 장비와 이송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필요문서

- ① 비만대사수술환자의 응급 상황 발생 시 연락이 가능한 의료인력에 대한 명시
- ② 응급 상황 발생 시 이송 가능한 병원 명단 및 연락처
- ③ 이송 병원 명단의 경우 1 차 및 2 차 의료기관은 필수사항, 3 차 의료기관은 선택사항임.

점검사항: 필요문서 사항을 모두 확인

5. 비만대사수술 환자 교육

요구사항: 비만대사수술 전후의 환자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원내 프로토콜이 있어야 하며, 이는 인증 평가 시 비만대사수술 진료지침(별첨5)으로 대체 제출이 가능하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비만대사수술의 적응증 및 금기를 환자에게 고지한다.
- ② 다양한 비만대사수술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설명한다.
- ③ 수술의 목적, 위험성, 이득 및 대체치료 등이 수술 동의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 ④ 식이, 운동, 비타민 및 미네랄 섭취, 생활습관 변화 등에 대한 교육
- ⑤ 퇴원 후 운동, 식이, 병원방문 계획, 약물복용에 대한 설명
- ⑥ 빈맥, 발열, 호흡곤란, 복통, 구토 등 합병증 시 발생할 수 있는 증상 교육

필요문서: 비만대사수술 환자 교육에 대한 원내 프로토콜

점검사항: 교육 프로토콜의 세부항목들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

6. 인증 후 자료 수집 체계

양질의 자료는 질 향상과 인증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내 중앙 조직으로 비만대사수술 자료 수집처를 편성하여 모든 입원과 수술의 결과가 데이터로 기록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상평가원은 각 인증 기관의 임상 관리자로서 임상 자료 관리 부서 편성 및 업무를 수행하며, 수술 후 외래 추적관찰에 대한 결과 및 합병증, 사망, 감량에 따른 병적 비만 합병증 호전에 대한 정보를 중앙 자료 Registry에 온라인으로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자료는 매년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료 수집 체계는 비만대사수술의 질평가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이다.

7. 기관 인증 평가 결과

- ① '인증'으로 평가된 기관에게는 인증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최종 인증서를 발급한다.
- ② '인증보류'로 평가된 경우, 2개월 이내에 보완 심사를 통해 '인증'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
- ③ '인증탈락'으로 평가된 기관은 재평가의 준비가 되면 1년 뒤 인증 서류를 제출하여 평가를 받을 수 있다.

8. 기관 인증 갱신

인증평가 기관은 최초 인증 3년 뒤 인증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하며, 갱신 후 3년마다 동일한 절차로 갱신이 진행된다. 기관 인증 갱신은 아래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서류심사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점검이 필요할 수 있다. 인증 갱신은 최초 인증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3개월 안에 완료하여야 하며, 3개월 안에 갱신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은 비만대사외과학회 홈페이지의 인증기관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다.

기관 인증 갱신조건

- ① 정기적인 비만대사 수술 위원회 개최 (연 3회 이상, 회의록 첨부)
- ② 비만대사수술 Registry 입력 확인
 - 3년간 기관의 비만대사수술 청구 건수와 확인 (보험 청구 증빙자료 제출)
- ③ 갱신 심사 당시 유효한 개인 인증외과 의사가 기관에 근무해야 함
- ④ 갱신 심사 당시 유효한 인증 코디네이터가 기관에 근무해야 함.

단, 갱신 심사 당시에 코디네이터의 이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 ①②③ 조건이 충족되면 조건부로 갱신 승인 후 빠른 시간 안에 코디네이터 채용 및 인증절차를 마무리 하여 인증서를 제출해야 함.

9. 인증 기관 모니터링

인증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최종 인증된 기관이 인증 이후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환자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안정성 모니터링 소위원회”의 검토 후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인증 취소 혹은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안정성 모니터링 소위원회

- ① 구성: 학회장, 윤리위원장, 인증위원장, 교육연수위원장, 총무위원장, 인증위원회 간사
- ② 정보전산위원회로부터 자료를 받아 매년 인증기관에 대한 안전성관련 모니터링을 시행함
- ③ 윤리위원회로부터 모니터링 대상 기관이 재인증 불가사유가 없는지 확인한다.
- ④ 수술 후 합병증발생 비율과 재원기간을 모니터링해서 인증갱신에 현장실사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필요시 현장 실사를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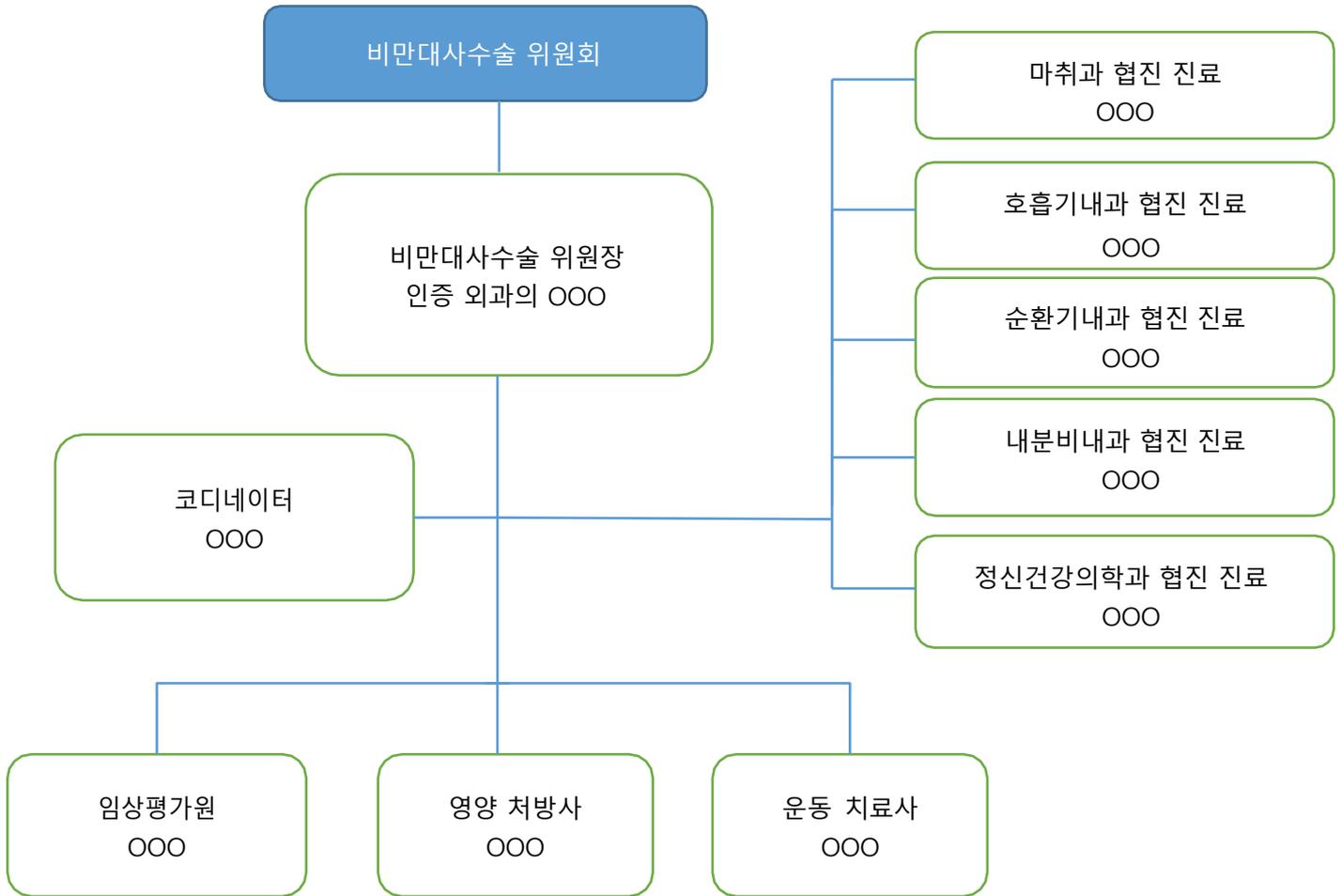
별첨1. 기관 별 필수 인증요건

1차의료기관(의원)	2차의료기관(병원)	3차의료기관(종합병원)
(인증받은) 비만외과의	(인증받은) 비만외과의	(인증받은) 비만외과의
간호사, 식이처방사 (대체 가능)	간호사, 식이처방사(영양사)	간호사, 식이처방사(영양사), 운동치료를 담당할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운동치료사
비만대사수술코디네이터	비만대사수술코디네이터	비만대사수술 전문코디네이터
담당 내/외과의 혹은 가정의학의 학의	담당 내과의 혹은 가정의학의 학의	호흡기, 순환기, 신장, 내분비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안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비만대사수술 마취의 (프로토콜)	비만대사수술 마취의 (프로토콜)	비만대사수술 마취의 (프로토콜)
의무기록관리	의무기록관리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고도비만환자 수술이 가능한 수술실, 수술대 (임계하중 명시 견적서)	고도비만환자 수술이 가능한 수술실, 수술대 (임계하중 명시 견적서)	고도비만환자 수술이 가능한 수술실, 수술대 (임계하중 명시 견적서)
회복실	회복실	회복실
병실: 침대(최대 하중 명시)	병실: 침대(최대 하중 명시)	병실: 침대(최대 하중 명시)
X-ray 촬영 장비 (수탁가능)	X-ray 촬영실	일반 촬영실 (조영제 촬영 가능)
	Portable X-ray, Ultrasound	Portable X-ray, Ultrasound
		컴퓨터 단층 촬영실
		중재 방사선 설비 (인터벤션시설)
혈액검사 (수탁가능)	혈액검사 장비	혈액검사 장비
	내시경 장비	내시경 장비 및 전문의 (치료 내시경 가능)
	비만 환자용 휠체어(권장), 이송 카트, 보행기(walker)	비만 환자용 휠체어(권장), 이송 카트, 보행기(walker)
Sequential compression Device	Sequential compression device	Sequential compression device
심폐소생술 장비확보 (기관삽관, 인공호흡, 혈액학적 모니터 가능)	심폐소생술 장비확보 (기관삽관, 인공호흡, 혈액학적 모니터 가능)	심폐소생술 장비확보 (기관삽관, 인공호흡, 혈액학적 모니터 가능)
	수혈장비	수혈장비
중환자 이송가능한 상급병원 목록	중환자 이송가능한 상급병원 목록	집중치료실 및 중환자실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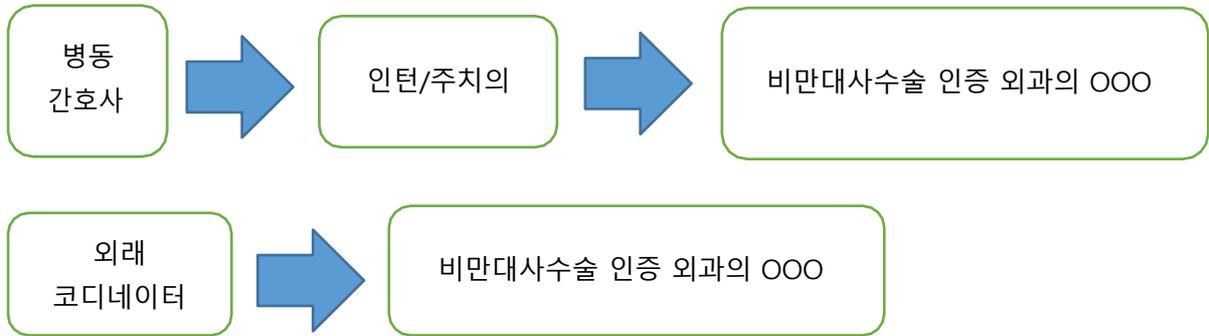
별첨2. 기관인증 평가표

평가 항목	평가 기준 (3차의료기관)	충족 여부
비만대사수술 위원회	조직도 및 직능에 대한 문서, 회의록	
비만대사수술 외과의 (위원장)	비만대사수술 인증의 증명	
비만대사수술 전문코디네이터	조직도, 의료인 자격증	
비만대사수술 임상평가원	조직도, 자격증	
간호사, 식이처방사(영양사), 운동치료사 등	조직도, 자격증	
마취에 대한 지원	고도비만환자 수술 마취 관리에 대한 프로토콜 조직도 내 명시	
집중치료실 및 중환자실 지원	집중치료실 및 중환자실 설비 중환자 관리가능 의료인력	
내시경 시설	내시경실 설비 진단 및 치료 내시경 의료 및 간호인력	
광범위 진단 및 중재 방사선 설비	진단 및 중재 방사선 설비 진단 및 중재 시술 가능 전문의	
관련된 타과 협진의 진료 (호흡기, 순환기, 신장, 내분비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등)	조직도 내 역할 명시	
고도비만환자 수술 가능 수술대	최대 하중 및 키에 대한 규격	
일반 촬영실 (조영제 촬영 가능)	방문 실사 중 심사 항목	
영상의학적 진단 설비 (Portable X-ray, Ultrasound 등)	방문 실사 중 심사 항목	
혈액검사 및 수혈장비	방문 실사 중 심사 항목	
수술기구 (자동 봉합기, 견인기, 길이가 긴 복강경 수술기구)	실사 및 견적서	
심폐소생술 장비확보 (기관삽관, 인공호흡, 혈액학적 모니터 가능)	실사 및 견적서	
심부정맥 혈전증 방지용 Sequential compression device sleeve	실사 및 견적서	
고도비만환자 사용가능 병실: 침대, 가운, 화장실	방문 실사 중 심사 항목	
고도비만환자 사용가능 저울	최대 하중 및 키에 대한 규격	
고도비만환자 사용가능 휠체어, 이송 카트, 보행기(walker)	최대 하중 및 키에 대한 규격	
응급환자 발생시 연락망 및 이송	응급상황 발생시 연락 가능한 의료인력 응급상황 발생시 이송 가능한 병원 명단	
비만대사수술 환자교육	환자교육 프로토콜 준비여부	

별첨 3. 비만대사수술 위원회 조직도



별첨 4. 응급상황시 연락망



별첨 5. 비만대사수술진료지침(PDF file)

별첨 6. 필수제출서류목록

1. 비만대사수술 위원회

- 비만대사수술 위원회 조직도 및 직능(위원장, 코디네이터, 임상평가원)에 대한 문서: 조직도상 직능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을 기재
- 위원회 조직 후 시행한 위원회 회의에 대한 회의록: 위원회 회의 참석 여부 (년 2회이상) 기재

2. 비만대사수술관련 시설: 장비 목록과 장비 사진 (브로슈어 대체 가능) 첨부

- 집중치료실 및 중환자실 설비
- 진단 및 치료 내시경이 가능한 내시경 시설
- 진단 및 중재 방사선 설비
- 고도비만환자 수술 가능한 수술대(최대 하중에 대한 규격 견적서)
- 일반 촬영실 (조영제 촬영 가능)
- 영상의학적 진단 설비 (Portable X-ray, Ultrasound 등)
- 수술기구 (자동 봉합기, 견인기, 길이가 긴 복강경 수술기구)
- 심폐소생술 장비확보 (기관삽관, 인공호흡, 혈액학적 모니터 가능)
- 심부정맥 혈전증 방지용 Sequential compression device sleeve
- 고도비만환자 사용가능한 병실: 침대, 가운, 화장실
- 고도비만환자 사용가능한 저울
- 고도비만환자 사용가능 휠체어, 이송 카트, 보행기(walker)

3. 응급환자에 대한 연락 및 이송

- 비만대사수술환자 응급 상황 발생시 연락이 가능한 의료인력에 대한 명시: 원내 응급연락망 첨부
- 응급 상황 발생시 이송 가능한 병원 명단 및 연락처: 3차 의료기관은 선택사항

4. 비만대사수술 환자 교육: 환자 교육 프로토콜 혹은 비만대사수술 진료지침 첨부

개정 (2021.5.24)

1. 비만수술 위원회 구성

"...인증의 부재가 발생하면 학회는 해당기관에 대한 인증을 한시적으로 보류할 수 있다.
" 내용추가

1-2 비만대사수술 코디네이터

"기관인증 신규 및 갱신 후 인증코디네이터 부재(퇴직 및 이직) 발생시 해당업무를 대신할 인원을 지정하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추후 재갱신까지 인증코디네이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내용추가

필요문서: "③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에서 부여한 코디네이터 인증을 획득 (기관인증 갱신 및 2022년 3월 이후 신규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에 적용)" 내용추가

7. 기관인증평가결과

"① '인증'으로 평가된 기관에게는 인증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최종 인증서를 발급한다."

재인증관련 내용 삭제 후 8. 항목으로 통합

"④ 인증취소" 항목 삭제 후 9. 항목 신설

8. 기관인증갱신 항목 신설

"인증평가 기관은 ... 삭제될 수 있다."

기관 인증 갱신조건

① 정기적인 ...

위 ①②③ 조건이 충족되면 조건부로 갱신 승인 후 빠른 시간 안에 코디네이터 채용 및 인증절차를 마무리 하여 인증서를 제출해야 함."

9. 인증기관 모니터링 항목 추가

"인증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안정성 모니터링 소위원회

① 구성...

④ 수술 후 합병증발생 비율과 재원기간을 모니터링해서 인증갱신에 현장실사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필요시 현장 실사를 결정한다."

별첨 1. 기관별 필수 인증요건 중 비만 환자용 휠체어 "권장"으로 수정